

#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

(문장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19
----------	------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3일

발 의 자 : 문장길 의원(1명)

찬 성 자 : 김평남·전석기·최웅식·김정환·  
김제리·김동식·이정인·김경우·  
송재혁·김상훈·이승미·송명화·  
김수규·이광성·노승재·김기대·  
조상호·송아량·이현찬·최선·  
이영실·정진철·김기덕·박기열·  
성흠제·김희걸·문병훈·강동길·  
홍성룡·김상진·서윤기·최정순·  
김광수·문영민·채유미 의원(35명)

## 1. 제안이유

-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회용품의 사용 감축을 유도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통해 사무실에서 1회용품컵과 페트병 사용 금지, 개인 텀블러 사용 권장 등의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음.
- 이와 같은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점점 심각해져 가는 환경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과 이를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자원 낭비 예방 및 환경보전을 도모하려고 함.

##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 나.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하여금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하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다.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하여금 5년마다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라.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의 행사 및 회의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제1항)
- 마.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것을 규정 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유관기관과의 협력
3. 교육·홍보의 활성화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행사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 제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홍보) 교육감은 자원 낭비 예방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학교 교직원

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과 관련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제7조(교육·홍보), 제8조(협력체계 구축)에 따라 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778,500천원(연평균 155,7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55,7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공문을 통해 실시한다고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1회용품 사용 및 제한과 관련한 교육·홍보 비용은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였던 사업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 사업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  
※ 동 사업예산은 2020년에 삭감되었음
- 협력체계 구축 비용은 이와 유사한 2020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인 ‘민간환경 협력사업’ 사업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
- 물가상승률 미반영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778,500천원(연평균 155,700천원)

- 교육·홍보 비용 + 협력체계 구축 비용

= 548,000천원 + 230,500천원

= 778,5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안제7조    교육·홍보 비용	109,600	109,600	109,600	109,600	109,600	<b>548,000</b>
	안제8조    협력체계 구축 비용	46,100	46,100	46,100	46,100	46,100	<b>230,500</b>
소계(b)		155,700	155,700	155,700	155,700	155,700	<b>778,500</b>
□총 비용(b-a)		155,700	155,700	155,700	155,700	155,700	<b>778,500</b>

○ 교육·홍보 비용 ≍ 548,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text{교육홍보비용})_i = 548,000$ 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2019년 '1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 예산 준용

- 내용 : 1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 플라스틱 수거 day 운영, 찾아가는 환경교육 운영 등
- 소요예산 : 109,600천원

· 운영비		109,000	천원
- 행사용품비	50,000원 × 3회 =	1,500	천원
- 인쇄비	1,000원 × 5,000부 =	5,000	천원
- 외부위탁비용(환경교육)	100,000,000원 × 1업체 =	100,000	천원
- 심사수당(용역업체 선정)	(40,000원+10,000원) × 10명 × 3회 =	1,500	천원
- 기타용역비(원가계산수수료)	1,000,000원 × 1회 =	1,000	천원
· 업무추진비		600	천원
- 업무담당자 협의회비	20,000원 × 10명 × 3회 =	600	천원

자료 :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 협력체계 구축 비용 ≍ 230,5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text{협력체계구축비용})_i = 230,500$ 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2020년 '민간환경 협력사업' 예산 준용

- 대상 : 초·중·고등학교 교원, 교육전문직(20명 내외)
- 내용 : 환경재단 업무협약 이행사업
- 소요예산 : 46,100천원

· 운영비		45,500	천원
- 외부위탁비용	42,000,000원 × 1업체 =	42,000	천원
- 심사수당(용역업체 선정)	(40,000원+10,000원) × 10명 × 3회 =	1,500	천원
- 기타용역비(원가계산수수료)	1,000,000원 × 1회 =	1,000	천원
- 일반수용비(행사진행비)	500,000원 × 21회 =	1,000	천원
· 업무추진비		600	천원
- 업무담당자 협의회비	20,000원 × 10명 × 3회 =	600	천원

자료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분    석    관      원동아

☎ 02-2180-7953

e-mail : dongya1@seoul.go.kr